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3039
----------	------

2022. 2. 1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1. 제안경위

- 2022. 1. 20. 우형찬 의원 발의 (2022. 1. 25. 회부)

## 2. 제안이유

- 서울시(문화본부)는 기 보유한 미디어 자원과 신규 자원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늘 새로운 미디어아트 예술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자 '미디어아트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 미디어파사드를 활용 야간에 다양한 볼거리와 야간명소(디지털 옥외 시민문화공간) 조성 등 관광자원화
  -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경제 측면뿐만 아니라 특색 있는 도시 이미지 형성으로 서울시의 국제 경쟁력 강화
  - 공익광고·예술작품 콘텐츠 상영·시정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공공미디어로서 활용

- 세계 주요도시들은 조명을 이용하여 주요 관광지에 야간 볼거리를 마련하고 야간명소로 활용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LED 워터보드, 미디어파사드 등 조명을 활용하여 야간에 다양한 볼거리로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도시조명은 관광자원으로 도시경제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 형성과 국제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사례 : New York 타임스 스퀘어, 오사카 도톤보리·신세계 등)
- 「서울특별시 빔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미디어파사드의 개념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 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 등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 등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이는 장식조명 수준의 구시대적 정의로써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과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의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식조명 이상의 콘텐츠에 대한 문화적 속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장식조명 관련 용어와 차별성을 고려하여 미디어파사드의 정의를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문화적 요소로서 의미 있는 그래픽, 문자, 이미지 등을 표출하고 소통하는 미디어 기기’로 발전하는 근원적 기술을 명시하고 문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용어의 정의를 변경해야 함
- 인공조명에 의한 빔공해 방지법 제12조에 의하면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빛방사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 의한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운영은 ‘건축물 외관을 꾸미기 위한 조명’ 수준으로 현실성이 없고 규제 중심의 제도운영으로 ‘미디어아트 서울’ 프로젝트와 관련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공공시설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소는 예산절감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고 그 중 미디어파사드는 상업용도가 아닌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공공 미디어 자원임에도 일반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20 \sim 300 \text{cd}/\text{m}^2$ )을 적용하여 사실상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규제를 하고 있음.

특히, 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내용 디스플레이(모니터 등)의 경우 휘도는  $300 \text{cd}/\text{m}^2$  정도면 충분하나, 조도가 높은 야외 간선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는 그보다 휘도가 더 높아야 미디어아트 예술작품의 식별(시인성)과 감상이 가능하며, 미디어파사드의 첨단기술, 도시문화, 소통 측면에서의 기능의 발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함

### 3. 주요내용

- 첨단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디어 파사드와 관련된 근원적 기술을 명시하고 문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개

념으로 용어의 정의를 변경(안 제2조 관련)

-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소에 설치하는 미디어파사드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대상으로 지정하고, 세부사항은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안 제8조 관련)

####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정의를 ‘미디어파사드’ 정의로 변경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에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에 적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미디어파사드 정의”

-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이 상위법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조명기구의 정의와 범위 내에서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을 각각 정의하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미디어파사드의 기술적·문화적 특징에 기반하여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미디어파사드를 정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4. 미디어파사드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문화적 요소로서 의미 있는 그래픽, 문자, 이미지 등을 표출하고 소통하는 미디어 기기를 말한다.

- 법령을 좀 더 살펴보면(붙임1), 조명기구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 정의되고(법 제2조제2호) 그 범위는 공간조명·광고조명·장식조명으로 정해진 가운데(시행령 제2조), 공간조명 및 장식조명은 시행령에 나열된 사항 외에도 조례에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어,  
이 조례에서 법령을 토대로 공간조명·광고조명·장식조명 각각을 정의하되,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의 장식조명으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을 추가 정의하고 있음.
- 즉, 이 조례에서 조명의 정의는 법령에 기반한 사항으로, 미디어파사드의 특징을 토대로 개념을 보다 현대화할 수는 있겠으나, 상위법령에 따른 조명기구의 범위에서 ‘장식조명’으로 명확히 정의될 필요가 있고, 학술적·사회적 용어가 아닌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포괄적 정의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가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환경부 행정규칙에서는 “미디어파사드”를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외관의 전체 또는 일부분과 조명기구의 설치영역 또는 비추는 영역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발광조명, 투광조명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음<sup>1)</sup>.
- 한편, 건축물 외에 공개공지나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미디어 표출시설이

---

1)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21-172호, 2021. 8. 25.]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미디어파사드"란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외관의 전체 또는 일부분과 조명기구의 설치영역 또는 비추는 영역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발광조명, 투광조명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방식이다.

증가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현재 ‘미디어시설물 장식조명’ 신설을 검토 중인데(붙임2),

이와 병행하여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과 ‘미디어시설물 장식조명’ 각각의 특징과 개념, 범위, 계획기준·관리방안 등을 면밀히 고찰한 후2), 이 조례를 개정하여 용어 정비 및 필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미디어파사드 빛방사허용기준 완화”

- 이 개정조례안은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의 미디어파사드를 빛방사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광고조명의(전광류 광고물)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3), 현재 미디어파사드에 적용되는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을(300cd/m<sup>2</sup>)4)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1500cd/m<sup>2</sup>)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생략) <신 설>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소에 설치

2) 미디어파사드는 62개소(서울스퀘어, 롯데월드타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설치되어 있고, 미디어시설물은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음(17개소 중 10개소가 '21년에 신규 설치됨, 붙임3)

3) 미디어파사드에서 광고는 허용되지 않음

\*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서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대상에 설치되거나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부속장치로 광고조명이 규정된 가운데, 옥외광고물법 허가 대상에 미디어파사드는 포함되지 않음. 또한, 공간·장식조명과 달리, 광고조명은 조례 위임사항 없음

4) 조명환경관리구역 제4종(상업지역) 빛방사허용기준(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광고조명 1500cd/m<sup>2</sup> 이하, 경관조명 300cd/m<sup>2</sup> 이하

되는 미디어파사드를 영 제6조 제3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규칙 제4조에서 정한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빛방사허용 기준 이하의 범위 내에서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빛공해방지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서,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제1종~제4종) 공간·광고·장식 조명기구 각각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명시하고(법 시행규칙 [별표1]) 조례로는 필요시 법의 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붙임1).
- 다만, 행사·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받아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치 않을 수 있는데(법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6조제3항, 조례 제8조), 서울시는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미디어파사드’<sup>5)</sup> 시범사업 대상지에(5개소, 붙임4) 1년간 한시적으로 빛방사허용기준 미적용을 승인한 바 있음(‘21.11.17. 좋은빛위원회 심의, 현재 1100~1600 cd/m<sup>2</sup>로 송출<sup>6)</sup>).

5) 버스정류소 스마트 쉘터 설치 추진계획(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19.9.)의 일환으로, '버스정류소 스마트 쉘터 설치'는 노후화된 버스정류소를 스마트시티, 친환경, 교통안전이 융합된 미래형 정류소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임

6) 시범사업지 중 송례문은 1144cd/m<sup>2</sup>, 홍대는 1533cd/m<sup>2</sup>으로 측정됨

-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밀집도가 높은 버스 정류소의 미디어파사드에 한해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을 제외하되, 광고 조명 빛방사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하여, 미디어파사드의 시인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조명기구별 빛방사허용기준 및 기준 미적용 대상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sup>7)</sup>, 미디어파사드 빛방사허용기준 완화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버스정류소에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인 만큼, 운전자·보행자의 시각적 분산 및 집중력 저해, 피로감 상승 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등이 심도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종 합”

- 이 조례에서 미디어파사드는 장식조명으로 정의되어 법령의 장식조명기구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중앙버스 전용차로 버스정류소 미디어파사드에 한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완화코자 용어 정의 및 빛방사허용기준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미디어파사드’와 같이, 버스정류소가 승하차 기능 외에도 여러 편의기능이 종합된 장소로 발전되는 추세에서, 미디어 파사드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완화하여 시인성과 활용성을 높이려는 일환으로 이해되나,

---

7) 이 개정조례안에서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의 근거로 인용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제6조제3항)은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를 위한 절차·방법·서류 등에 관해 조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해석되며, 빛방사허용기준 미적용 대상은 법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 위임사항은 없음(법제12조제1항)



운전자·보행자의 시각적 분산 및 집중력 저해, 피로감 상승 등과 이로 인한 안전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고, 조명기구의 범위와 빛 방사허용기준 등은 법적 사항으로서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정희
연락처	02-2180-8206
이메일	rienrien@seoul.go.kr

## <붙임 1> 관련 법규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이하 “빛방사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변경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국내외 행사,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 서류를 조명기구 설치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 축제 등의 개요
2. 조명기구 설치 계획도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빛방사허용기준** (제6조제1항 관련)

1.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 <sup>2</sup> )

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 <sup>2</sup> )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b>1500</b> <b>이하</b>	cd/m <sup>2</sup>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나. 그 밖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cd/m <sup>2</sup>

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 <sup>2</sup>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b>300</b> <b>이하</b>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좋은빛 형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 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4.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5. "빛축제"란 전구, 전등 또는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아름답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 축제를 말한다.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조명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식조명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 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빛방사허용기준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리구역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 200m 이내의 인접지역과 그 밖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조명기구에 대한 상향광 등급, 발광표면휘도 등은 조례 제10조의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붙임2>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시설물, 전광류 광고물 비교 (자료: 도시빛정책과)

구분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시설물(실태)	전광류 광고물
설치가능 장소	상업, 공업 (조명환경관리구역 제4종) 지역의 25m 대로와 면하는 건축물	상업, 공업지역을 포함하여 녹지지역의 공원(제2종) 등에도 설치되어 있음	상업, 공업지역의 4층 이상 15층 이하 건축물
허용규격 (크기)	제한 없음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규격 제한 없음	최대 225㎡ (가로 × 건축물 높이 1/2)
운영시간	일몰 30분 후 ~ 23시 소등 (시간당 40분 이내 상영)	주간 ~ 23시 (표출시간의 제한 없음)	아침 ~ 24시 소등
빛방사허용기준 발광표면휘도 (4종)	평균 25cd/m <sup>2</sup> 이하 최대 300 cd/m <sup>2</sup> 이하	야간 20 ~ 5100 cd/m <sup>2</sup> 다양함	1,500 cd/m <sup>2</sup> 이하
상영 콘텐츠	예술작품에 한정, 광고 불가	예술작품, 인터랙티브, 공공 홍보	광고 등 (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
심의절차 준수	조명시설 설치 전 콘텐츠 변경 시	일부 구조물 장식조명으로 심의 중이나 심의를 받지 않은 시설물이 다수	옥외광고물 설치전 (허가)
설치 사진			

○ 미디어파사드 사진 예시



<롯데월드타워>



<서울스퀘어>

○ 미디어시설물 사진 예시



<롯데월드몰 '미디어큐브'>



<송례문 스마트 버스쉘터>



<붙임3> 미디어파사드 및 미디어시설물 설치 현황 (자료: 도시빛정책과)

□ 미디어파사드

- 설치현황 : 62개소(서울스퀘어, 롯데월드타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 설치 허용구역
  -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공업, 상업지역) 내 25m 대로와 면하는 건축물
  - 명동·동대문·종로 등 관광특구 및 강남 마이스특구, 디지털미디어시티 등
- 상영콘텐츠 : 예술작품에 한정, 광고 불가

□ 미디어시설물

- 설치현황 : 17개소

연번	시 설
1	롯데잠실타워에 설치된 미디어 큐브
2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동선고가 굴다리의 'Dots Bridge'
3	세곡동 사거리 미디어아트
4	신사역 7번 출구 인근에 설치된 '다이내믹 그리드'
5	청담 한류거리의 '청담미디어스트리트'
6	노원 불빛정원 '미디어트레인'
7	망원한강공원의 서울함공원 '미디어월'
8	청담사거리 액자 프레임 형태의 '미디어 갤러리'
9	상암 DMC '거이니지'
10	승례문 스마트 버스쉘터
11	상암 DMC 'THEY'
12	도림천 신림교 미디어 핸드레일
13	당현천 당현1교 미디어 핸드레일
14	홍대입구역 스마트 버스쉘터(상행선)
15	홍대입구역 스마트 버스쉘터(하행선)
16	합정역 스마트 버스쉘터(상행선)
17	합정역 스마트 버스쉘터(하행선)

<붙임4>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미디어파사드 시범사업 관련 (자료: 도시빛정책과)

○ 추진배경

- 버스 전용차로 개통('04.7월) 후 16년 경과로 시설 노후화, 민원증가
- 미세먼지, 혹서·혹한 등 기후변화와 스마트 시대에 맞는 기능개선

○ 추진방향

- 스마트시티, 친환경, 교통안전이 융합된 미래형 정류소로 업그레이드
- 자동문, 정차위치안내, AI자동제어, 교통약자안내 등 승하차 자동화
- ICT·IoT기기, 정보제공, 편의시설 등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 미래 교통체계 도입과 비예산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 미디어파사드 설치 운영 리스트(5개소)

주소	승차대 길이	시설물 면적	광고 면적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5	45m	360m <sup>2</sup>	90m <sup>2</sup>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5-6	60m	480m <sup>2</sup>	120m <sup>2</sup>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5-6	45m	360m <sup>2</sup>	90m <sup>2</sup>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02	60m	480m <sup>2</sup>	120m <sup>2</sup>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02	60m	480m <sup>2</sup>	120m <sup>2</sup>

○ 운영계획

-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밝기를 기준 이하로 대폭 낮추어 운영
- 주변(샵 윈도우, 가로등 등 빛 밝기)환경과 유사한 밝기 유지
- 빛공해로 인한 민원 발생시, 즉시 밝기 조정을 통하여 민원 해소

※ 버스 쉼터 미디어파사드 현장사진

- 250cd/m<sup>2</sup> 송출(빛방사허용기준 적용) : 화면이 깨지고 콘텐츠의 색감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지 않음



- 1000cd/m<sup>2</sup> 송출(빛방사허용기준 제외) :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덜하고 콘텐츠의 색감이 식별 가능함

